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</p> <p>2. 제안이유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</p> <p>3. 주요요지                  ○위치: 강서구 화곡동 342, 343, 897 일대                  ○내용                  • 용도지역변경: 일반주거지역→일반상업지역 (33,237㎡)                  • 용도지구지정: 도시설계지구(33,237㎡)                  ○도시계획사항: 일반주거지역                  ○주민의견 청취결과: 없음.</p> <p>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)                  ○강서구 화곡동 342, 343, 897 일대 33,237㎡의 현재의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타당한 안으로 사료됨.                  ○이 지역은 서울시 도시계획상 신정지구 중심지역으로서 중심지역 개발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설계지구 지정이 요구된 지역임.</p> <p>5. 심사결과                  보류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margin-top: 10px;"> <tr> <td style="width: 50%;">의안 번호</td> <td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">76</td> </tr> </table>	의안 번호	76	<p>염창동 274 일대 42,434㎡의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, 용도변경 예정지역 중 11,251㎡를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,                  ○이 지역은 자치구에서 정한 등촌삼거리 생활권 중심지로서 이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준주거지역으로서 용도지역 변경과 동시에 도시설계지구 지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                  ○그러나 이 지역은 공항로 연변지역으로서 양천구 목동 606-18 일대도 생활권 중심으로 발전되어 있어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목동지역도 준주거지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.</p> <p>5. 심사결과                  보류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margin-top: 10px;"> <tr> <td style="width: 50%;">의안 번호</td> <td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">77</td> </tr> </table> <p>1. 건 명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                  2. 제안이유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                  3. 주요요지                  ○위치: 강서구 화곡동 776, 781 일대                  ○내용                  • 용도지역변경: 일반주거지역→준주거지역 (17,106㎡)                  • 용도지구지정: 도시설계지구(17,106㎡)                  ○도시계획사항: 일반주거지역                  ○주민의견 청취결과: 없음.</p> <p>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)                  ○강서구 화곡동 776, 781 일대 17,106㎡의 현재의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, 또 같은 지역을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,                  ○이 지역은 강서구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목동사거리 생활권 중심지로서, 이 지역을 중심기능으로 육성, 발전되도록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안대로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동시에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</p>	의안 번호	77
의안 번호	76				
의안 번호	77				

<p>※이 지역은 강서구와 양천구의 접경지역으로서 양천구 중심지에도 강서구에 대응하는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설계지구의 지정이 요구됨.</p> <p>5. 심사결과 보류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margin: 10px 0;"> <tr> <td style="width: 15%;">의안 번호</td> <td style="width: 85%;">78</td> </tr> </table> <p>1. 건 명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</p> <p>2. 제안이유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</p> <p>3. 주요요지</p> <p>○위치 : 강서구 내발산동 719, 723, 강서구 화곡동 1006, 1013 일대</p> <p>○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용도지역변경 : 일반주거지역→준주거지역 (27,059㎡)</li> <li>· 용도지구지정 : 도시설계지구(27,059㎡)</li> </ul> <p>○도시계획사항 : 일반주거지역</p> <p>○주민의견 청취결과 : 없음.</p> <p>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)</p> <p>3. 주요요지</p> <p>○주택개량재개발구역지정조서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margin: 10px 0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25%;">구역명</th> <th style="width: 40%;">위 치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면적(㎡)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비 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신공덕 제3</td> <td>마포구 신공덕동 2-264번지 일대</td> <td>14,569</td> <td>신규 지정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○구역현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면 적 : 14,569㎡ (국·공유지 4,829㎡, 사유지 9,740㎡)</li> <li>- 건축물 : 180동(유허가 95동, 무허가 85동)</li> <li>- 세대수 : 379세대(가옥주 181세대, 세입자 198세대)</li> <li>- 도시계획사항 : 일반주거지역, 주차장정비지구, 일부2종미관지구.</li> <li>- 주민동의율 : 토지(87.9%), 건축물(81.6%)</li> </ul> <p>.....</p> <p>사당 제6주택개량재개발구역 변경결정에</p>	의안 번호	78	구역명	위 치	면적(㎡)	비 고	신공덕 제3	마포구 신공덕동 2-264번지 일대	14,569	신규 지정	<p>○강서구 내발산동 719, 723과 화곡동 1006, 1013 일대 우장산역 생활권중심지인 27,059㎡의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, 아울러 같은 지역을 생활권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도시설계지구로 신규 지정하고자 하는 안이나,</p> <p>○용도지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보면, 우장산 전철역 도로에 따라 장방향으로 준주거지역을 배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 서울시에서 정한 도시계획 변경기준 모델과 맞지 않아 재검토가 요구됨.</p> <p>5. 심사결과 보류</p> <p>.....</p> <p>신공덕 제3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제출년월일 : 1995. 8. 8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</p> <p>1. 건 명 : 신공덕 제3주택개량재개발구역지정</p> <p>2. 제안이유 : 신공덕 제3주택개량재개발구역지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관한 의견청취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제출년월일 : 1995. 8. 8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</p> <p>1. 건 명 : 사당 제6주택개량재개발구역 변경결정</p> <p>2. 제안이유 : 사당 제6주택개량재개발구역 변경결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다음 페이지에 계속)</p>
의안 번호	78										
구역명	위 치	면적(㎡)	비 고								
신공덕 제3	마포구 신공덕동 2-264번지 일대	14,569	신규 지정								